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9 - 17 - 079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오버마인드

의 결 일 2019. 4. 17.

주 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 및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및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21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filesun.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Ⅱ. 현장점검 결과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9~10월 전체 46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15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8년 11~12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2018. 12. 26.)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 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성실히 업데이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점검일)까지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업로드가 가능한 상태)

※ 불법음란정보 표본(방심위 DB)을 업로드해 본 결과, 업로드가 진행됨(파란색 부분)

피심인은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게시판(통합검색창)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검색이 가능한 상태)

※ 통합검색창에 사업자 설정 금칙어(노모)가 적용되지 않아 불법음란물이 검색됨(붉은색 부분)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제2호.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제3호.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제4호.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 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성실히 업데이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을 차단하지 아니한 행위와,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게시판(통합검색창)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 내용
㈜오버 마인드	기술적조치 미이행	§22의3① 2호	§30의3① 1, 2호	1.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 조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성실히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2.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 조치를 일부 게시판에 적용하지 않은 행위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 및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및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나.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 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및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별도의 감경 및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2의3①	700만원	없음	없음	**700만원**
계				**7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4월 17일

위원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